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054

발의연월일: 2024. 10. 30.

발 의 자:이종배·김소희·김예지

박충권 · 최은석 · 임이자

이종욱 · 송석준 · 신동욱

나경원 · 김성원 · 강승규

의원(12인)

제안이유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 및 자국 우선주의 정책의 도구로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양산하 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무역기술장벽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 응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에 관하여 「국가 표준기본법」 1개의 조문에서만 규정하고 있고, 현재 운영 중인 무역기술장벽 질의처, 기술규제 내용의 세계무역기구 통보, 회원국에 대한 질의 조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외 기술규제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제정안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수출 활동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원활한 수출활동을 지원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및 질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질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규제 제·개정시 통보문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무역기술장벽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함 (안 제10조).
-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경우 무역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
-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위하여 3년마다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12조).
-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

- 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의 현황,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규제·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하여 기술규제·무역기술장 벽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관련 조사·연구,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카. 정부는 기술규제 개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기술규제 개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년도의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이행 및 무역

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2조).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원활한 수출활동을 지원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무역기술장벽"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무역기술장벽을 말한다.
- 2. "무역기술장벽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 다.
- 3. "국내기술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제품·서비스·시스템 등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기준[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법령 등(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공고, 훈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에

규정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기술규정
-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
- 4. "성문표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성문표준을 말한다.
- 5. "체약상대국"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약상대국을 말한다.
- 6.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이나 지역무역연합체 와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국제협정을 말한다.
- 7. "적합성평가"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말한다.
- 8. "적합성평가기관"이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을 말한다.
- ② 제1항에서 정의한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국내외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기술규제가 무역기술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기술규제를 제정·개정할 경우 해당 기술규제가 과학적 합리성을 유지하되, 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역기술장벽을 축소하기 위한 모범규제 관행(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의 투 명성·개방성·비차별성, 불필요한 무역 제한의 회피, 국제적으로 조화된 조치의 사용, 동등성의 인정, 경쟁정책의 적용 등 무역 관련 주요 원칙, 관행 등을 말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널리 공유 ·교환·전파 및 정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 제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 서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른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에 대하여는 제2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질의처 설치 • 운영

제6조(무역기술장벽 질의처 설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 술장벽협정에 따라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및 질의 업무를 원활히 수 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기술장벽 질의

- 처(이하 "질의처"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질의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국내기술규제의 세계무역기구에 대한 통보
-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한 문서의 접수 및 보급
- 3.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국내기술규제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
- 4. 특정무역현안(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회의에서 무역기술장벽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이의를 제기한 안건을 말한다)에 대한 대응
- 5.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 회의 참석 등 무역기술장벽 해소 대응
- 6. 무역기술장벽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그 밖에 질의처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통보문의 제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내기술 규제의 제정·개정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 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할 문서(이하 "통보문"이라 한다)와 제정·개정하려는 국내기술규제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소관 국내기술규제가 국제표준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국제 표준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 2. 소관 국내기술규제가 국제표준기관의 지침 및 권고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지침 및 권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적합성평 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내기술규제의 제정·개정이 제1항 각 호의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을 경우 지체 없이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문 및 제정·개정하려는 국내기술규제의 내용을 받으면 이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회원국이 세계무역기구로부터 통보받은 제4항의 통보문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날부터 60일의 의견수렴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국민의 안전·보건, 환경보호, 국가안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견수렴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8조(회원국의 질의에 대한 조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보

문에 대하여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 1. 의견제시 기간의 연장
- 2. 관련 문서 및 정보의 제공
- 3. 통보문에 대한 의견 제시
- 4. 국내기술규제의 시행 유예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질의를 받으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 내용을 해당 회원국에 회신하여야 한다.
- 제9조(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대응)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과 무역기술장벽이 발생하지 아니하 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협정의 협상, 이행 및 운영의 점검
 - 2.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 성문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의 개발·채택 및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무역기술장벽의 해소를 위한 양국간 협의 및 산업계 지원
 - 3.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 성문표준 또는 적합성평가 절차 관련

정보교환

- 4.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 적합성평가 결과의 인정 또는 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 요청에 대한 협의
- 5.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그 밖에 무역 및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 장벽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 정책협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 제11조(무역영향분석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내기술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통보대상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내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이하 "무역영향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무역영향분석의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무역영향분석의 결과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국내기술규제의 기준 및 절차 등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3 년마다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 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기반 조성

- 제13조(실태조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무역기술장벽의 현황,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국내기술규제의 국제기준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시기・방법 및 통계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규제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정보, 기술규제의 성문표준 인용 정보 등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하고, 통보문의 통보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규제 ·무역기술장벽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무역기술장벽 관련 연구 등에 대한 출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무역기술장벽 관련 조사·연구,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및 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 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교육·훈련과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기술규제 개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 4.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술규제 개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 관련 교육의 지원

-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 제18조(국제 교류·협력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도상국의 기술규제 및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기술규제 개선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민간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0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기술장벽 대응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국내기술규제 개선·무역기술장벽 대응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 2. 기술규제·무역기술장벽 현황 등의 자료 수집·조사·번역 및 분 석 업무의 지원
 - 3. 제7조제3항에 따른 검토 업무지원
 - 4. 제9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
 - 5. 제14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 6. 제16조에 따른 기술규제·무역기술장벽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등 지원
- 7.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
- 8. 제18조에 따른 국제교류 협력 추진 및 개발도상국 지원
- 9.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 게 된 경우
- ⑤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업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2조(국회에 대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년도의 무역기술장 벽협정의 이행 및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 공 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